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결 시 동일안전 1년간 재발의 금지〉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46호)

2025. 2.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민전 · 안철수 · 서천호 · 강대식 · 이성권 · 진종오
이종배 · 강선영 · 나경원 · 조정훈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12. 31.

3. 회 부 일 : 2025. 1. 2.

※ 의안번호 : 714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결된 안건의 반복적인 발의로 인한 의결 과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규정하여 같은 회기 중에는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임시회를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및 8월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임시회 연평균 개최횟수가 8회에 이르는 등 회기 간 시간적 간격이 줄어들어 따라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기간이 단축되어 일사부재의 원칙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금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사부재의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안건이 부결된 경우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2조).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제92조(일사부재의) ----- 부결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

현행법 제92조는 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부결된 안건을 반복적으로 회의에 부의하게 될 경우 특정사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될 수 있고, 같은 문제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없이 다른 의결을 한다면 어느 것이 그 회의체의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회 의사의 단일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¹⁾.

현행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은 같은 회기 중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회기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전 회기에서 부결된 것과 동일한 안건을 다

1)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7., p.462

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음.

개정안은 국회 운영의 연중 상시화로 회기 간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간격이 단축되어 일사부재의 원칙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아,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 안건의 반복 제출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국회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일사부재의의 적용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제한할 경우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과 경제·기술·사회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국회의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4